

- ◇ 도시교통정비지역, 교통권역 내 각종 개발사업(도시,산업단지, 건축물 등)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

□ 구성현황

- 관련근거 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 19조
교통영향평가지침 제 16조의6
- 구 성 : 교통, 도로, 도시계획,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1인('87년 7월 최초 구성)
 - 위원장(민간인) : 우송대학교 ○○○ 교수
 - 임 기 : '15. 8. 17 ~ '17. 8. 16(2년)
- 회의운영
 -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, 회의 때마다 추천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·운영
- 기 능 :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검토, 교통종합개선안 제시
- 운영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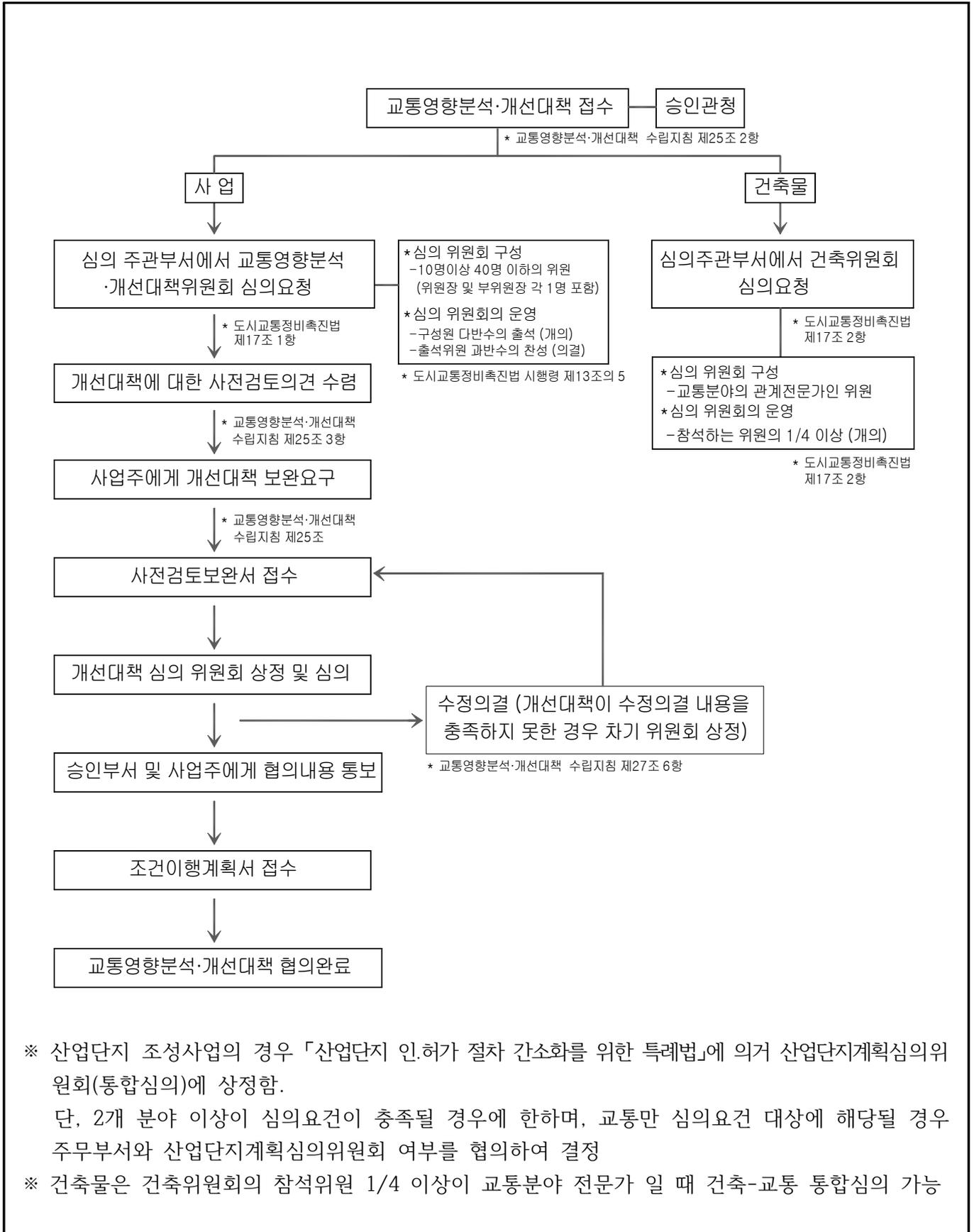
년 도	'16	'15	'14
실 적	8회/11건	7회/14건	9회/14건

□ 앞으로 추진계획

-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통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

자료1

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



※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「산업단지 인.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(통합심의)에 상정함.

단, 2개 분야 이상이 심의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며, 교통만 심의요건 대상에 해당될 경우 주무부서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

※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참석위원 1/4 이상이 교통분야 전문가 일 때 건축-교통 통합심의 가능